

稅務相談

國民福祉向上과 더불어 增大되는 醫療需要 가운데
醫療保險의 擴大實施는 國民醫療需要를 점차 充足시키고 있다. 그러나 增大되는 醫療需要와 醫療質의 選好度에 비해 醫療機關의 發展은 現實情을勘察한 醫療制度上の 各種問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本會는 이에 특히 病院諸稅面에 關心을 갖고 病院稅制欄을 마련하여 病院運營 發展의 一助가 되고자 한다.

相談：鄭 基 善

서울대병원 병원연구소 수석연구원

공인회계사

柳 泰 鉉

공인회계사·正宇會計法人

(問) 医療法에 의해 医療法人을 설립할 時
保社部에서 요구하는 병상당 400万원중 일부
를 土地(병원부지 이외의 土地)로 출연 (일정
기간후에 売却하여 出捐金化한다는 但書下) 한
경우 出捐된 土地의 売却에 따른 处分益에 대
하여 特別附加税가 과세되는지요? (경기도 S
병원)

(答) (1) 현재 保社部에서는 医療法人의 신
규설립시 병원부지외에 병상당 400万원을 확
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상당 400万원을
현금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이나 다
른 고정자산의 출연도 위와같은 但書下에 허
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法人이 土地등을 売却한 경우에 处分益
이 발생되면 特別附加税가 과세되는데 特別附
加税의 非課稅 또는 免除에 관하여는 法人稅
法 제59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上記條項 제1항, 제13호는 “社會福祉事業
法에 의하여 설립된 社會福祉法人이 소유한 토
지등으로서 社會福祉施設에 직접 사용하는 토
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는 특별부가세를 부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불행하게도 医療法人이 소유한 토지의 매
각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出捐을 목적으로 의료법인에 기부한
土地등도 売却時에 处分益이 발생한다면 課稅

對象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3) 이 問題는 의료법인 모두에 적용되어 앞
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病院들에게도 적
용될 문제이기 때문에 政府에 건의하여 関係
條項을 삽입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問) 医療法人等 (財團法人, 社會福祉法人
등)이 病院에서 발생한 所得(利益)의 일부를
法人의 固有目的事業인 宣教, 医學研究등에 사용
되도록 기부한 경우에 捐費로써 인정되는지의
与否와 이에 따른 問題点이 있는지의 与否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산I병원)

(答) 원래 医療法人등은 非營利法人으로서
公益事業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医療法人
등이 수행하는 여러가지 사업중 医療業은 収
益事業으로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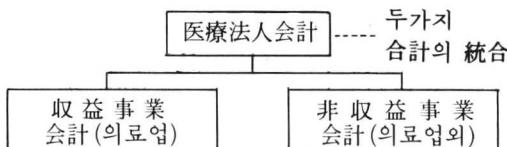
医療法 제42조(附帶事業)를 보면 “医療法人
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
하는 외에 다음의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1) 医療人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
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調査研究”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医療法人의 會計는 収益事業인 병
원이 있고 非収益事業인 研究나 教育事業이 있
는 경우(財團法人등의 경우에는 宣教 · 握學 ·

학術支援등 여러가지 非収益事業이 있을 수 있음) 아래와 같이 区分되는 것입니다.



즉,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와 비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는 区分하여 행하게 되며 장부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法人的 회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합쳐서 財務諸表를 만들면 되므로 法人만의 特定事業(예, 利子, 配当収入등)이 없는 경우에는 法人회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例는 学校法人的 경우 볼 수 있는 바, 학교법인은 学校会計(校費·실험실습비·학도호국단비등을 費目別로 나누어 처리)와 収益事業인 의과대학부속병원·연구공연장·호텔 또는 営利法人과 같은 형태의 株式会社 등의 회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가지 회계를 합쳐서 法人회계로 합니다. 学校法人的 경우에도 별도의 収入(예, 利子·配当収入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区分하여 나타내고 다른 두 가지 회계와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事件에서 수익사업인 의료업에서 발생한所得을 비수익사업인 연구사업등에 轉出한 경우에 이를 損費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주머니만 달라졌다고 이를 損費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法人税法 제18조나 同施行令 제42조 제16호의 “非營利法人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収益事業에서 생긴 소득을 그 法人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寄附金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損費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4) 그러나 위와같이 損費처리를 허용하여준

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구히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규정이 相続税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相続税法 제8 조의 2(相続税課税額不算入)를 보면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財產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同施行令 제3조의 2(公益事業)제2항 제11호는 “医療法人이 운영하는 事業”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인이 収益事業에서 발생한 수입을 비수익사업에 지출한 것은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일단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同令 제7항 제2호를 보면 “公益事業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출연 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에 대한 法人税……(中略)……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부터 1年内에 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 제8 조의 2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贈与税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위의 규정은 그 해석에 異論이 있으나 医療法人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利益의一部를 비수익사업에 전출시켰으나 비수익사업 부분에서 그 목적사업인 宣教·學術·獎學 등의 목적으로 1년이내에 80%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法人税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法人的 代表(理事長)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6) 非營利(公益)法人에 관한 例規通牒이나 判例등이 적은 관계로 앞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앞에서 열거한 法條文등의 趣旨는 비영리를 표방하여 脱税를 막겠다는 것이므로 이 点은 유의하여 稅務上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鄭基善)

〈題目〉 修正申告 및 加算税에 관한 質疑입니다 (인천직할시 남구 J병원 경리부장).

〈問〉 修正申告를 할 수 있는 法的根拠는 무엇입니까?

〈答〉 國稅(관세와 지방세를 除外한 内國稅)에 관한 基本事項과 共通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國稅基本法 第45條는 다음과 같은 修正申告期限을 定하고 있습니다.

(1) 法人税 및 附加価値税 : 法定申告經過日后 6個月內(豫定申告의 경우는豫定申告經過後 3日内).

例 1 : 法人税의 修正申告, 期限(사업년도 :

83. 1. 1 ~ 83. 12. 31 경우)

期 限	自己調整計算書添附法人		外部調整計算添附法人	
区 分	一般法人	外部会計監査法人	一般法人	外部会計監査法人
決算確定期限	'84. 2. 14	'84. 2. 14	'84. 2. 29	'84. 2. 29
申告期限	'84. 2. 29	'84. 3. 15	'84. 3. 15	'84. 3. 30
修正申告期限	'84. 8. 29	'84. 9. 15	'84. 9. 15	'84. 9. 30

(2) 其他의 國稅경우는 法定申告期限 經過后 1月内입니다.

〈問〉 修正申告를 할 수 있는 適格要件은 무엇입니까?

〈答〉 法定申告期限내에 課稅標準申告書를 提出한 者이어야 함으로 所定期限내에 아예 提出하지 아니했던 者는 修正申告를 할 수 없읍니다.

當初申告後 修正申告前에 法人이 合併 또는 相續에 의하여 納稅義務를 承繼한 경우는 修正申告 할 수 있다고 봅니다.

〈問〉 修正申告 方法과 修正事項의 範囲는 어떠한지요?

〈答1〉 別紙第16号 書式인 “課稅標準修正申告 및 追加自進納付 計算書”에 다음事項을 記載한 내용과 書類를 添附하여야 합니다.

- 當初申告한 課稅標準과 稅額
- 修正申告하는 課稅標準과 稅額
- 其他必要한 事項
- 當初申告書 사본 및 自進納付 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하는바 當初內容은 “赤書로 表記”하고 修正內容은 “黑書로 併記”하여야 하며, 其他 修正된 必要書類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答2〉 修正事項의 範囲는 當初 課稅標準作成할때 發生된 漏落, 誤謬는 勿論 當該申告書作成前에 이미 發生한 源泉의in 漏落도 誤謬도 修正事項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問〉 修正申告의 効力에 따른 加算税의 減免은 어떠한 内容이 있는지요?

〈答1〉 過少申告加算税의 免除 : 當初申告의 過少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수정신고된 範囲안에서 免除됩니다. 따라서 當初申告를 하지 않은 경우는 修正申告의 資格이 없으며, 修正申告에 의한 無申告加算税가 免除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答2〉 重過少申告加算税의 免除排除等

가. 法人税의 경우는 法人税法 第41條第1項 2호 단서에 의한 대통령령(제113조의 과소신고소득의 계산)에 해당하는 過少申告의 경우는 算出稅額의 30%를 賦課하는바, 同過少申告加算税는 免除되지 아니함.

나.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稅務公務員이 調查에 差手한 것을 아는 경우로써 이때의 修正申告 加算税는 免除되지 아니함. 이 경우 過少申告加算税의 免除與否를 修正申告書 提出者的内心의 主觀的 事實의 存在與否에 있게 규정한 것은 執行上 難點이 있다고 봅니다.

〈答3〉 無納付 過少納付加算税의 輕減 修正申告와 함께 追加自進納付를 한者에 대하여는 ①當初申告를 하였으나 稅額의 自進納付를 아니하였다가 수정신고와 함께 納付하는 경우와 ②自進納付의 過少로 인한 加算税는 50%相當加算税를 輕減받을 수 있습니다.

〈答4〉 稅政協力義務不履行으로 인한 加算税의 경우는 國稅基本法 第48條(가산세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加算税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加算税의 減免申請을 할 수 없습니다. (例: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 출 가산세,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불명가산세 등). 담당: 柳泰鉉 ■